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10
----------	-----

제출년월일 : 2007. 8. 24.

제출자 : 대전광역시교육감

1. 제안이유

-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고, 그 선출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 현행 무료 법률상담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교육감이 변호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소정의 상담료를 지급하고
- 시교육청의 소속직원과 그 산하에 있는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청 사무 범위에 벗어난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 무료 법률상담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법률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담내용의 범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관장 사무로 한정함. [조례안 제4조]

나. 상담대상자의 범위

- 상담대상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직원은 물론 산하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로 제한함. [조례안 제5조]

다. 상담의 방법

-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담일 전일까지 전화, 전송 또는 이메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신청하며, 상담은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원칙으로 함. [조례안 제6조]

라. 법률상담관의 위촉

-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함.
[조례안 제7조]

마. 상담소의 운영

- 상담일은 매주 화요일로 하고 상담시간은 15:00부터 17:00까지로 하며, 상담자가 많을 경우에는 상담일과 상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조례안 제8조]

바. 상담료의 지급

-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지급 [조례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참조
- 예산조치: 2007년도 예산에 상담료 210만원을 반영하여 집행 중임.
- 합의여부: 해당없음
- 입법예고: 입법예고 결과(2007. 7. 12. ~ 8. 1.) 의견 제출내용 없었음.
- 기타사항: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신 내용(붙임 참조)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직원은 물론 산하기관 및 각급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규정된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관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상담소의 명칭) 법률상담소의 명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 법률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상담소의 위치) 상담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내에 둔다.

제4조(상담내용의 범위) 상담내용의 범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규정된 교육감 관장사무로 한다.

제5조(상담대상자의 범위 등) ① 상담대상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직원은 물론 그 산하기관 및 각급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로 한다.

②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담일 전일까지 전화, 전송이나 이메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성명, 상담 시간, 연락처 등을 밝히고 신청한다.

② 상담은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상담관이 답변을 위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추후에 제1항의 매체를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제7조(법률상담관의 위촉)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위촉한다.

제8조(상담소의 운영 및 관리) ① 상담소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행정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상담일은 매주 화요일로 하고 상담시간은 15: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상담자가 많을 경우에는 상담일과 상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상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로 정한다.

제9조(수당)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공직선거법

-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제4호 :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 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항 :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직무상의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 :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질의회신 내용(2007.5.1.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질의내용 :

대전광역시교육감이 변호사를 법률상담관으로 위촉, 소정의 상담료(50,000원)를 지급하며 소속공무원과 초·중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주 1회 교육청내에서 방문,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하여 법률자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바,

-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위와 같은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조례로 제정하고 운영할 경우 무방한지?
- 조례로 정하고 운영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 3항의 제한기간 중에는 운영을 중지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

귀 문의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전문직업인을 민원상담원으로 위촉하여 민원실에 배치하고 교육청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들에게 순수한 무료민원상담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전문직업인을 민원상담원으로 위촉하여 교육청의 사무범위를 벗어나는 민원에 대하여 무료민원상담을 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나 선거구민에 대한 이익제공행위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어 그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은 교육감선거에 준용되지 아니함.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9. 10

교육사회위원회

I.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8. 24 대전광역시교육감

나. 회 부 일 자 : 2007. 8. 24

다. 상 정 일 자 :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7. 9. 10)

상정, 질의,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국장 강진수)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소속직원과 그 산하에 있는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청 사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됨에 따라 무료 법률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된 교육활동 및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담내용의 범위를 교육감 관장 사무로 한정함(안 제4조).

나. 상담대상자의 범위를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직원과 산하기관

및 각급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로 제한함(안 제5조).

다. 상담신청을 전화·전송 또는 이메일 등의 매체로 하며,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원칙으로 함(안 제6조).

라.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함(안제7조).

마. 상담일은 매주 화요일로 하고, 상담시간을 15시부터 17까지로 함(안제8조).

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를 지급함(안 제9조).

III. 검토의견 (전문위원 : 안문환)

본 제정 조례안은 무료 법률상담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교육감이 변호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무료로 상담해주고 이에 따른 소정의 상담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 총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와 제3조는 법률상담소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 제4조 내지 제6조는 상담내용의 범위·대상자·방법을 규정하고,
- 제7조는 법률상담관의 위촉에 관한사항을,
- 제8조 내지 제9조는 상담소의 운영 및 관리와 상담시간, 법률 상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고, 그 선출에 있어서 「공직

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 20일 개정되면서,

-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무료 법률상담소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어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거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음.

IV. 질 의 요 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